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위해 합니다



행정안전부

수신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령 질의 회신(근로복지공단)

귀 공단 보상부-348(2013.1.16.)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가. 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요청하고 있으나, 최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연금공단 등)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답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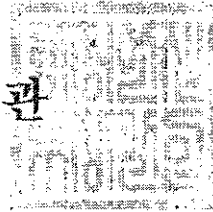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공단(근로복지공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의2제1호에 따라 공단은 위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의2제1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과 관련한 귀 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 권한과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의무, 위 자료 제공의 요청과 관련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31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주무관

정종일

행정사무관

서상우

개인정보보호과장

제출 01/24

한순기

협조자

시행 개인정보보호법-267 (2013.01.24.)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02-2100-3615 전송 02-2100-1739

접수 보상부-511

(2013.01.24.)

/ <http://www.mopas.go.kr>

/ jjjung@mopas.go.kr

/ 비공개(5)